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방문요양급여 제공기준

방문요양급여는 요양보호사가 신체 활동지원 (세면, 목욕, 식사도움, 체위변경 등), 인지 활동지원,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 생활지원 (취사, 청소, 세탁) 등을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적절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가사 및 일상 생활지원은 1회 방문당 최대 90분 범위내에서 제공하여야하며 정서지원은 1회 방문당 최대 60분 범위내에서 제공하여야 한다.

2.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 분	금액(원)	구 분	금액(원)
30분 이상	17,450	150분 이상	50,640
60분 이상	25,320	180분 이상	57,020
90분 이상	34,120	210분 이상	63,530
120분 이상	43,430	240분 이상	70,080

3.방문요양 공휴일가산 원거리 교통비용

가산은 22시이후 06시 이전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제18조의 표에 따른 급여비용의 30%를 가산한다.
공휴일가산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제18조의 표에 따른 급여비용의 30%를 가산한다. 원거리 교통비용은 수급자의 실거주지부터 운영중인 가장 가까운 방문요양 기관까지의 거리에 따라 방문당 산정한다. 다만 ,수급자를 방문한 종사자가 수급자와 가족이거나 5km미만의 거리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산정하지 아니한다.

